



### 3. 건설업 사망사고 다발 12대 핵심 위험요인

#### < 추락 >

점검 항목	법 위반(권고) 사항
<b>1. 공통<sup>㉑</sup>(단부·개구부)</b>	
<b>▲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</b> (안전보건규칙 제13조) - 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여부 등	
<b>▲ 출입금지 등</b> (안전보건규칙 제20조) - 추락에 의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금지 등	
<b>▲ 계단의 난간</b> (안전보건규칙 제30조) - 1미터 이상 개방 측면 안전난간 설치	
<b>▲ 추락의 방지</b> (안전보건규칙 제42조) - 추락·넘어질 위험 장소 작업 시 작업발판,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- 추락방호망은 「산업표준화법」에서 정하는 성능기준 충족	
<b>▲ 개구부 등 방호조치</b> (안전보건규칙 제43조) - 안전난간·울타리·추락방망·덮개 등 설치 (수직형 추락방망은 「산업표준화법」에서 정하는 성능기준 충족) - 개구부 덮개 고정 - 안전대 착용	
<b>▲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</b> (안전보건규칙 제44조) -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	
<b>2. 비계<sup>㉒</sup>(비계·작업발판, ㉓달비계, ㉔이동식비계)</b>	
<b>▲ 작업발판(비계)의 구조</b> (안전보건규칙 제56조) - 적재하중 준수, 안전난간 설치, 둘이상 지지물 연결 등	
<b>▲ 비계 등의 조립·해체 및 변경</b> (안전보건규칙 제57조) - 조립·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·범위 및 절차 주지 등	
<b>▲ 강관비계 조립시 위험방지</b> (안전보건규칙 제59조~제60조) - 침하방지 조치, 교차 가새 보강 등 - 비계기둥띠장 간격 준수, 적재하중 준수 등	

<p>▲ 달비계의 작업시 위험방지 (안전보건규칙 제63조~제6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작업용 섬유로프 상태 확인</li> <li>- 마모될 우려가 있는 로프 보호 조치</li> <li>- 구명줄 설치, 안전대 착용, 로프 고정점 2개소 이상 확보 등 달비계 설치 기준 준수</li> </ul>	
<p>▲ 이동식비계 (안전보건규칙 제68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, 아웃트리거 등 전도방지 조치</li> </ul>	
<p><b>3. 지붕(㉓지붕)</b></p>	
<p>▲ 지붕 위에서 위험방지 (안전보건규칙 제44조~제45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, 작업 전 점검</li> <li>- 안전난간, 채광창 덮개 설치, 슬레이트 지붕 발판(30cm이상) 설치</li> <li>- 추락방호망 설치, 안전대 착용 등</li> </ul>	
<p><b>4. 사다리(㉔사다리)</b></p>	
<p>▲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(안전보건규칙 제2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도방지 조치 실시 등</li> </ul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지도·권고 사항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</li> <li>▲ 2인 1조 작업 준수</li> <li>▲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등</li> <li>▲ 3.5m 초과 높이 사용금지</li> </ul>	
<p><b>5. 고소작업대(㉕고소작업대)</b></p>	
<p>▲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(안전보건규칙 제186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상승방지장치 설치, 보호구 착용, 작업자 탑승 및 작업대 올린 상태에서 이동 금지 등 + 안전난간 설치</li> </ul>	
<p><b>6. 철골, 거푸집동바리 등 작업(㉖철골, ㉗거푸집 및 동바리)</b></p>	
<p>▲ 조립·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 (안전보건규칙 제333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미터 이상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, 안전대 착용</li> </ul>	
<p>▲ 철골조립 시의 위험방지 (안전보건규칙 제380조~제383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립 시 방법 준수</li> <li>- 승강로 및 가설통로 설치</li> <li>- 우천 또는 강풍 시 작업 제한 등</li> </ul>	

< 끼임 >	
점검 항목	법 위반(권고) 사항
<b>1. 공통</b>	
▲ 유해·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 안전인증 (법 제83조~제85조, 제87조)	
▲ 자율안전확인 신고 (법 제89조, 제90조, 제92조)	
▲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(법 제93조~제101조)	
▲ 사용의 제한 (안전보건규칙 제36조) - 법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·기구·설비 및 방호장치·보호구 등 사용금지	
<b>2. 방호장치</b>	
▲ 원동기·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(안전보건규칙 제87조) - 기계·설비 등 덮개 등 설치 (ex: 핸드그라인더,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)	
▲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(안전보건규칙 제106조)	
<b>3. 정비 등 작업시 안전조치 &lt;LOTO(Lock Out, Tag Out)&gt;</b>	
▲ 운전 시작 전 조치 (안전보건규칙 제89조) - 운전 시작 전 근로자 교육, 작업방법,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 사전 확인	
▲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(안전보건규칙 제91조~제93조) - 결함 발견 시 정비 후 사용 - 건설기계 등 정비·검사·수리·교체·청소 등 작업 시 운전정지, 작업지휘자 배치 - 기계·기구·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 임의 해체 등 금지	
<지도·권고 사항>	
▲ 정비·검사·수리·교체·청소 등 작업시 운전정지 등 절차 인지 여부	
▲ 차량계 기계 수리 등 작업시 조치 (안전보건규칙 제176조, 제205~제206조) - 안전지지대·안전블록 사용 - 작업순서 결정, 안전블록 등 사용점검	

< 부딪힘 >	
점검 항목	법 위반(권고) 사항
<b>1. 혼재작업, 충돌방지(공통)</b>	
<b>▲ 관리감독자의 유해·위험 방지</b> (법 제16조, 안전보건규칙 제35조)	
<지도·권고 사항>	
<b>▲ 화물 상하차운반, 유지·보수 작업 등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별 작업시기·내용 등 공유·조정</b>	
<b>▲ 자격 등 취업 제한</b> (법 제140조) - 유자격자의 운전	
<b>▲ 출입금지 등</b> (안전보건규칙 제20조) - 기계·장비 작업반경 등 위험장소 출입금지	
<b>▲ 안전한 이동통로 설치</b> (안전보건규칙 제21조~제23조) - 조명 확보, 안전한 통로 설치 -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 표지 및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유지	
<b>▲ 작업계획서 작성, 작업지휘자 지정 신호방법 지정</b> (안전보건규칙 제38~40조) - 차량계 건설·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, 중량물 취급 작업, 입환작업 등 작업 계획서 작성, 작업지휘자 지정, 신호 방법 준수 등	
<b>▲ 제한속도의 지정</b> (안전보건규칙 제98조) - 사업장 내 제한속도 지정	
<b>2. 양중기(®이동식크레인)</b>	
<b>▲ 방호장치의 조정</b> (안전보건규칙 제134조) -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, 비상정지장치 정상작동 상태	
<b>▲ 해지장치 사용</b> (안전보건규칙 제137조, 제149조) -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설치	
<b>▲ 크레인 수리 등 작업</b> (안전보건규칙 제139조) - 감시인 배치, 주행로상 스톱퍼 설치	
<b>▲ 크레인 작업 시 조치</b> (안전보건규칙 제146조) - 신호업무 담당자 지정 등	

<p>▲ 와이어로프 등 (안전보건규칙 제166조~제170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음매 있는 와이어로프, 변형된 혹·샤클 등 사용금지</li> </ul>	
<p><b>차량계 하역운반기계(㉠트럭)</b></p>	
<p>▲ 접촉 방지 등 (안전보건규칙 제171조~제173조, 제393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, 작업지휘자·유도자 배치</li> <li>- 화물적재 시 적재방법 준수</li> </ul>	
<p>▲ 지게차 전조등 등의 설치 (안전보건규칙 제179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조등·후미등·후진경보기·경광등 후방감지기 등 설치</li> </ul>	
<p><b>건설기계 등(㉠굴착기)</b></p>	
<p>▲ 접촉 방지 등 (안전보건규칙 제199조~제204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설기계 사용 시 관계자 외 출입금지, 작업지휘자·유도자 배치</li> <li>- 주용도 외 사용 제한</li> </ul>	
<p>▲ 굴착기 위험방지 조치 (안전보건규칙 제221조의2~제221조의5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굴착기 후사경, 후방영상표시장치 등 설치 및 작동 여부 확인</li> </ul>	
<p><b>교량작업</b></p>	
<p>▲ 교량작업 시 준수사항 (안전보건규칙 제369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계자외 출입금지, 인양용 로프 두군데 이상 결속 등</li> </ul>	
<p><b>4. 개인보호구 지급·착용</b></p>	
<p><b>점검 항목</b></p>	<p><b>법 위반(권고) 사항</b></p>
<p>▲ 보호구의 지급 등 (안전보건규칙 제32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모, 안전화,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지급</li> </ul>	
<p>▲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(법 제40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모 착용 등 사업주의 조치사항 준수</li> </ul>	

## 5. 기타 현장 안전·보건 조치 사항